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69호	서지영의원	2024.11.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4.11.25.)
	제10095호	고민정의원	2025.4.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제11084호	강경숙의원	2025.6.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5.6.30.)

나.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6. 3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 7. 10.)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

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서의 사용”을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을 “저작”으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

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자료를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u>도서의 사용</u>) <u><신 설></u>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① “ <u>교과용 도서</u>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
<u><신 설></u>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저작-----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u>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u> ② <u>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자료를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 ----- ----- -----제29조제3항----- ----- ----- -----. ② (현행과 같음)
--	--